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12. 23 선고 2022가단24450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

담당변호사 양태훈, 유재민, 이예슬, 김세은, 최건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2. 11. 25.

판 결 선 고 2022. 12. 23.

주 문

1. 가. 피고 B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20. 1. 8.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약정을 6,112,98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 C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20. 1. 8.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약정을 8,225,45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다. 피고 D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20. 1. 8.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약정을 5,008,29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라. 피고 D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20. 1. 8.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약정을 2,490,32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마. 피고 D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20. 1. 8.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약정을 1,260,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2. 원고에게, 피고 B은 6,112,989원, 피고 C은 8,225,451원, 피고 D은 8,759,1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,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정계선

별지